

기금관리 규정

- 목 차 -

제1조 목적	281	
제2조 기금의 재원		
제3조 기금의 운용		
제4조 운영재원		
제5조 기금관리대장 비치		
제6조 보고		
부 칙	282	
① (시행일)		
② (경과조치)		

기금관리 규정

2005. 06. 13 제정, 2011. 09. 06 개정
2015. 11. 09 개정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ECO융합섬유연구원 (이하 “연구원”이라 한다)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개정 15.11.09>

제2조(기금의 재원)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한다.

1. 설립당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
2. 설립 후 정부, 지방자치단체, 기타 법인 및 개인이 출연한 토지, 건물 등 부동산
3.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.
4.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 할 것을 의결한 재산
5. 회계 연도의 결산결과 발생한 이월금 중 일부의 적립금<개정11.09.06>

제3조(기금의 운용) ①제2조에 의거 조성된 기금은 금융기관에 예치 또는 이사회의 의결에 의한 기타의 방법으로 운용하되 수익성과 안전성을 고려하여 효율적인 방법으로 운용하여야 한다. ②기금은 원금의 실질가치를 유지할 수 있도록 운용 하여야 한다. 다만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 연구원 「재산관리규정」 제3조의 재산에 대한 대수선·교체 및 감가상각 보전을 위한 목적으로 운용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도 있다.<개정11.09.06>

제4조(운영재원) ①연구원의 운영재원은 정관 제4조2항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입, 사업수입, 기타 수입 등으로 충당한다.

②운영재원은 연구원의 설립목적 및 재무회계·감사규정에 적합하게 처리되어야 한다.

제5조(기금관리대장 비치) 원장은 기금관리대장을 비치하여 기금의 운용관리 사항을 상세히 기록하고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.

제6조(보고) 원장은 매회계년도 결산기 직후에 개최되는 이사회에 당해 연도 기금운용 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.

부 칙

(2005.06.13.), (2011.09.06.), (2015.11.09.)

①(시행일)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②(경과조치) 이 규정 시행 이전에 행한 업무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.